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가합59284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2015. 6. 26.

판결 선고2015. 7.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891,086원 및 그 중 289,890,421원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2015. 6. 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4. 체결된 재산분할을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D, E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금원 중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D, E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4. 체결된 재산분할을 '289,891,086원 및 그 중 289,890,421원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최종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C는 위 가.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E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44,945,21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채권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2007. 4.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2007. 4.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하게 될 원리금채무를 위 신용보증의 범위 안에서 신용보증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은 7차례에 걸쳐

조건이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2007. 4. 20.	F	당초 400,000,000원최종 288,000,000원	당초 2008. 4. 18.최종 2015. 4. 10.	당초 700,000,000원최종 630,000,000원
--------------	---	-----------------------------------	-----------------------------------	-----------------------------------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②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07. 4. 20.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피고 회사가 원금을 연체함에 따라 2014. 9. 2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4. 중소기업은행에 291,915,387원(원금 288,000,000원 + 이자 3,915,387원)을 대위변제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2014. 11. 6. 채권보전절차를 위한 대지급금으로 1,019,934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2014. 11. 24. 회수한 3,044,900원을 위 대지급금 1,019,934원, 위 구상금 원금 2,024,966원에 차례로 충당한 결과 원고의 대위변제금 잔액은 289,890,421원이 남았다.

나) 그리고 충당된 위 구상금 원금 2,024,966원에 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아래 표와 같이 665원(원 미만 버림)이다.

2014-11-24	2014-11-24	2,024,966원	$2,024,966원 \times 연 12\% \times 1일/365일$	665원
------------	------------	------------	---	------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

1) 피고 B은 2014. 9. 2. 자신의 처인 피고 C와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2014. 9. 4.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4. 9. 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9. 5. 접수 제373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채권최고액 합계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1	2012. 9. 10. 접수 제50027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B	120,000,000
2	2012. 9. 14. 접수 제50906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B	120,000,000
3	2013. 4. 17. 접수 제16390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B	120,000,000
4	2014. 2. 20. 접수 제6480호	중소기업은행	피고 회사	180,000,000
5	2014. 8. 21. 접수 제34103호	중소기업은행	피고 회사	60,000,000
합계	600,000,000			

3) 한편, 피고 B와 피고 C가 이혼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C와 피고 D, E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1) 피고 C는 2014. 9. 17. 자신의 오빠 부부인 피고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9. 25. 접수 제39767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D,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1,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3, 4, 5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올라 제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구청, 강동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
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891,086원(대위변제금 잔액 289,890,421원 + 확정손해금 66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89,890,42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6. 4.까지 약정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조).
- 2) 살피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일(2014. 9. 4.)부터 약 20일 후에 피고 회사가 대출 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2014. 9. 26.)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4. 11. 24.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B의 무자력

- 1) 을다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80,000,0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반면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은 ①

현대카드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237,000원, ②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현금서비스 채무 2,197,000원, ③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476,411,000원, ④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289,890,000원, 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무 123,750,000원, ⑥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360,000,000원 등 합계 1,267,485,00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다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아버지 G이 1988. 4. 21.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G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B이 2011. 3. 1.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다 제2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는 피고 B과 1985년 혼인하여 2014년 이혼할 때까지 29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였으며, 특히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시부모와 함께 거주한 사실, ② G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루어진 사실, ③ 피고 C는 시부모 뿐만 아니라 피고 B와 사이에서 태어난 3남매를 부양하였고, 1990년경부터 2014년 이혼할 때까지 직장생활을 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이 된 사실, ④ 피고 B이 운영하던 피고 회사는 2007. 4.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체결 당시 원고의 보증금액이 400,000,000원이었는데 이후 매년 보증금액이 감소하여 2014. 4. 8. 보증금액이 288,000,000원으로 축소되었고, 피고 B은 2012년경부터 개인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물상보증으로 제공한 사실, ⑤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고 B, C의 자녀인 H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가 피고 B와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 전득자인 D, E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C, D, E의 선의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피고 C는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의 부도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이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 C는 피고 B과 29년간 동거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고, 협의이혼과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때로부터 한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D, E는 2014. 9. 14. 피고 C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재건축 예정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재건축 호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올라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4. 9. 14. 11:15경부터 11:30경까지 오빠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 D이 피고 C로부터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직후인 같은날 11: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 C와 피고 D은 남매지간인 점, 피고 C는 피고 B와 이혼한 뒤 피고 D, E의 주소로 전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D, E가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E의 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D, E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및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80,000,000원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부분인

90,000,000원 $[(780,000,000\text{원} - 600,000,000\text{원}) \times 1/2]$ 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 C는 90,000,000원, 피고 D, E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90,000,000원 중

각 4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C,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종택

판사김동현

판사허문희

별지